

서울특별시교육청 급식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급식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,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, 2020년 34건 대비 5배 가량 증가할 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으며,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,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,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,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

식중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- 또한,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 설비 등의 설치 시,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 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또한 마련하고자 합니다.
- 이에 안 제1조의 경우,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, 안 제5조의 경우, 기본계획 수립 시,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.
- 또한, 안 제6조의 경우,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해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 안 제9조의 경우,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있어,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